

 보건복지부	보 도 참 고 자 료			
배 포 일	2020. 2. 27. / (총 4매)			
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	팀 장 담 당 자	송 준 헌 김 나 진	전 화	044-202-3803 044-202-3334

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 지원·운영 지침안 마련

- ▲ 경제적 보상 ▲지자체 파견 인력 전담팀을 통한 숙소 등 생활지원
▲파견 종료 후 14일간 모니터링 -

□ 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**(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,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)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대구 등으로 치료를 위해 파견한 의료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을 담은 「**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·운영 지침(안)**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.

○ 이 지침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(의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, 임상병리사 등)이 현장에서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▲ 경제적 보상 ▲ 숙소 등 생활 지원 ▲ 파견 종료 후 자가격리 기간 부여 등으로 구성하였다.

□ 우선 군인, 공중보건의,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의료인력의 경우 2주 파견 후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의료진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감염의 위험을 예방하기로 하였다.

○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활동수당으로 의사 12만 원(일), 간호사 7만 원(일)이 지급된다.

□ 민간에서 모집된 의료인력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동안 근무 가능하며, 보상수당은 의사 45만 원~55만 원(일), 간호사 30만 원(일)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.

- 각 시도에서는 파견된 의료인력을 위한 지원팀을 구성하여 파견된 기간 동안 숙소 및 교통편 지원, 건강관리 등의 생활을 지원하게 된다.
- 기관별 전담관을 지정하여 파견인력에 대한 복무상황 및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.
- 파견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에는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.
- 파견자가 자가 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·군인의 경우 공가를 사용토록 하고, 민간에서 파견된 인력의 경우 기본 근무수당을 자가격리 기간동안 지급 받을 수 있다.
- 또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의 경우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파견받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.
-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려운 여건과 위험을 무릅쓰고 본업을 제쳐 두고 달려 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파견기간 동안 생활하는 데 힘든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

< 붙임 >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 지원·운영지침

붙임

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 인력 지원 · 운영지침

1

보 상

□ 지급내역 및 단가

- 군인, 공중보건의, 공공기관 : 2주 파견 후 교대(동의하 연장 가능)

구 분	인 건 비 내 역*
군 인	● 특별재난지역활동수당 의사 12만 원, 간호사 7만 원, 행정지원 7만 원(일당)
공보의	● 추가업무활동 장려금 일 12만 원
공공기관	● 특별재난지역활동수당 의사 12만 원, 간호사 7만 원(일당)

* 위험에 대한 보상 성격, 출장비는 별도 지급(대구 10만 원, 경북 9만 원)

- 민간모집 : 최소 2주 이상(지원자 동의하 연장 가능)

- 의사 45~55만 원/일, 간호사 30만 원/일 수준

구 분	인 건 비 내 역
의사	● 근무 수당 = 총 파견일수 × 35만 원 ● 위험 수당 = 15만 원 + (실제 근무일수 - 1) × 5만 원 * 1일째 15만 원, 2일째부터는 5만 원씩 지급 ● 전문의 = 실제 근무일수 × (10만 원) ● 전문직 수당 = 실제 근무일수 × (5만 원)
간호사	● 근무 수당 = 총 파견일수 × 20만 원 ● 위험 수당 = 15만 원 + (실제 근무일수 - 1) × 5만 원 * 1일째 15만 원, 2일째부터는 5만 원씩 지급 ● 전문직 수당 = 실제 근무일수 × (5만 원) - 병원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
간호조무사	● 근무 수당 = 총 파견일수 × 10만 원 ● 위험 수당 = 15만 원 + (실제 근무일수 - 1) × 5만 원 * 1일째 15만 원, 2일째부터는 5만 원씩 지급 ● 전문직 수당 = 실제 근무일수 × (5만 원) - 병원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
임상병리사	● 근무 수당 = 총 파견일수 × 18만 원 ● 위험 수당 = 15만 원 + (실제 근무일수 - 1) × 5만 원 * 1일째 15만 원, 2일째부터는 5만 원씩 지급 ● 전문직 수당 = 실제 근무일수 × (5만 원) - 병원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

* 출장비 별도 정액(대구 10만 원, 경북 9만 원), 교육 수당(15만 원, 1회), 야근수당(1만 원/시간)

2

숙소 등 생활지원

☐ 지자체 파견인력 전담팀 운영

- 각 시·도에 파견인력 지원 전담팀 구성·운영
- 기관별 파견인력 전담관 지정하여 파견자의 복무상황 및 건강상태 관리

☐ 숙소지원

- (원칙) 의료인력이 분산하여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수의 이용 가능 숙소 목록 제공(단체숙박 시 감염 등 위험 우려)
- (비용지급) 파견자에게 숙박비 및 일비 여비를 포함하여 광역시 10만 원, 시도 9만 원 정액으로 지급

3

파견종료 후 모니터링

☐ 파견 종료 후 14일간 모니터링

- (원칙) 자가격리 불필요, 14일간 증상발현 유무 등 모니터링
 - *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근무했을 경우 격리 불필요
 - (예외) 파견자가 자가격리를 희망하는 경우
 - (공무원·군인) 공가 사용 조치, (민간) 기본 근무수당 지급(위험수당 등 제외)
(공공기관) 2주간 유급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협조 요청*
 - * 의료인력을 파견한 기관에는 추후 손실보상 예정
 - 희망 시 파견을 받은 기관에서 격리장소 제공(지자체 격리시설 등 활용)
- ※ 수당 등 지급은 최소 2주 이상 근무했을 경우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, 현장 및 개인 사정에 따라 2주 미만 근무의 경우도 지급